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54호

2. 제 출 자 : 양민규 의원

3. 제출일자 : 2019. 10. 15.

4. 회부일자 : 2019. 10. 22.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Ⅲ.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2.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3.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9.10.25.~11.01.)결과 :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5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54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 그리고 이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의 심의만을 거친 채 서울시의회에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상의 흠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기금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2)]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총칙 규정을, 안 제3부터

2) 현재까지“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정”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1개임.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간사, 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원의 구성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위원의 경우 그 위촉 조건으로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 중 3년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 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기금운용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동 경력으로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위촉 조건이 기금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3)]

---

3)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동 조례안과 같이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운용되고 있는바,[4]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로 달리 규정·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에 대한 의견(안 제6조 및 제8조)

○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으로, “위원의 위촉 해지”는 “위원의 해촉”으로 일부 용어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8조의 조명 “위원의 위촉 해지”는 법제처에서 최근까지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지”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변경되어 기존의 “해촉”은 그대로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재권고한 것으로,[5]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여기서 제시한 순화용어가 모두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용어 사용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017년 12월, 188p).

---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5)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017년 12월, 247p).

○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동 정비기준에 제시한 순화용어도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동 조례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